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위원회 2차회의

1. 일 시 : 2004. 9. 1(수) 12시

2. 장 소 : 알렌관 201호

3. 참석 위원 : 총복기 학생복지처장, 오경자 여학생처장, 김현미교수(사회학)
황정일 대학원학생회 부회장, 최명규 총학생회 부회장,
김수진 총여학생회 회장, 김영희 상담원(간사)

4. 전회의록 낭독

5. 안 건 :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 2차 논의

6. 불 임 :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 2차회의 자료1부 끝.

성폭력대책위원회 소위원회 1차회의록

1. 일 시 : 2004. 7. 13(화) 오전 10시

2. 장 소 : 논지당 세미나실

3. 참석 위원 : 홍복기 학생복지처장, 오경자 여학생처장, 김현미교수(사회학),
황정일 대학원학생회 부회장, 최영규 총학생회 부회장,
김수진 총여학생회 회장, 김영희 상담원(간사)

4. 안 건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논의

5. 결 의

- ① 소위원회 위원장에 홍복기 학생복지처장이 만장일치 동의 및 제청으로 선출되다.
- ②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총여학생회안과 성폭력상담실안에 대해 모든 소위원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일부 개정안을 결의하다.
- ③ 추후 논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성폭력상담실과 총여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 논의하여 최종 결의하기로 하다.

6. 불 임

불임 1.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7. 폐 회

14시에 폐회하다.

기록 : 김영희(간사)

확인 : 홍복기(소위원회위원장)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2차회의 자료>

현행규정	개정안	검토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u>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u>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 (정의) -> 좌동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u>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u>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 좌동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u>피해자의</u>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u>피해자와 그 대리인의</u>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u>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 좌동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전문상담원,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u>상담실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로 총장이 임명하며, 상담실의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u> ③ <u>전문상담원은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u> ④ <u>직원은 상담실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u>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교육 및 제발방 지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의 기록보존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 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 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u>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 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 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 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 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 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 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직원 또는 학생위원은 해당 관련 사안 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u>⑥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좌동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 한 조치	제12조 (업무)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회의) -> 좌동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u>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실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u> ② 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u>피신고인</u>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u>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u>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3. <u>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u> 4. <u>가해자의 사회봉사</u>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 좌동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 좌동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3) <u>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u>	

<교내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차회의 자료>

현행 시행세칙	개정 안	검토사항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u>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u>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삭제(규정 제3조내용과 중복)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삭제(규정 제7조 ②항 내용과 중복)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삭제(규정 제7조 ③항 내용과 중복)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상담원의 수) 삭제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제6조(상담실의 업무) 삭제(규정 제8조 내용과 중복)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u>제2조(성폭력 예방교육)</u> <u>①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u> <u>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u>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칙에 의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u>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u>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u>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u> 삭제(규정 제9조 내용과 중복)	
<u>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u>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u>제3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u>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삭제(규정 제13조 내용과 중복)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삭제(규정 제10조 ④항 내용과 중복)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삭제(규정 제10조 ⑤항 내용과 중복)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u>가해자</u>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u>상담원은</u> 상담시 <u>진술인의 동의를 얻</u>은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u>상담실은</u>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u>피신고인</u>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③항을 준용한다.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⑦ <u>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u>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u>피신고인</u>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시 피해자와 <u>피신고인</u>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인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u>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u> ⑤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u>피신고인</u>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⑧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제⑦,⑧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u>가해자</u>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개사과는 <u>연세춘추</u> 등에 <u>사과문</u>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가해자의 사회봉사는 상담실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u>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u> ② 위원회는 <u>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u> ③ 위원회는 <u>피해자 및 가해자</u>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사과는 <u>연세춘추, 상담실 홈페이지</u> 등에 <u>사과문</u>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u>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사과를 할 수 있다.</u>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로그를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해자 재교육은 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u>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u> ⑥ 위원회는 <u>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⑦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사건 발생 후, 위원회는 <u>가해자가 학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위로 변동하는 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구하거나 발의해야 한다.</u> 1. 교원과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유보한다. 2. 학생인 경우, 군입대 휴학이나 졸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3. 졸업 예정자인 경우, 졸업을 유보시킨다. 4. 그 외의 경우(교환학생, 안식년 등) 지위변동을 막는 행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⑨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정제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⑩ 위원회는 <u>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정제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할 수 있다.</u> ⑪ 위원회는 <u>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제7조 (재심의)</u>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u>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u>③ 제심의 신청과 제심의 과정은 사건당 사자 각 1회에 한한다.</u>	
	<u>제8조 (기록 및 자료보존)</u> <u>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u> <u>②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u>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u>이 시행세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u>	